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필요성

최정명*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e-mail:steer@hj.ac.kr

Necessity of Preventive Education to Prevent Child Abuse

Jung-Myung Choi*
*Dept. of Social Welfare

요 약

아동은 아동권리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인 공간인 가정안에서 양육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살기에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고 이는 양육자 또는 보호자에 의해 빈번히 아동학대가 발생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의 중요성 및 예방 방안을 모색하여 예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서론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학대사건 대응단계는 “예방 및 발견단계, 신고 및 수사단계, 사후관리단계”로 나눌 수 있다.[1] 각 단계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학대가 발생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 선행논문에서도 예방의 중요성 및 예방 방안으로 예방 의무교육을 제시했지만 현재에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에 대한 법적처분 강화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전에 미리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면 이행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대에 온전히 노출되어 생사를 오고 가는 것은 아동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동은 아동권리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 미래 사회의 일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부모의 몫이기는 하지만 거시적 시각에서 보았을 땐 사회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방의 중요성 및 예방 방안을 모색하여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방 의무교육이 앞으로 꼭 이행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아동학대

2.1 아동학대 현황

2018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아동학대 의심사례인 33,532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24,604건(73.4%), 조기지원 사례 2,392건(7.1%), 일반사례 6,368건(19.0%)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18년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신고자 유형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는 27.3%로 나타났으며, 초·중·고교 직원이 19.1%,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2%, 의료인·의료기사 1.0%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72.7%이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3.1%, 부모가 18.2%, 아동본인 13.5%, 이웃·친구 5.5% 순으로 나타났다[2].

신고의무자보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72.7%로 나타나 신고자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것은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예방 캠페인을 통해 신고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비신고의무자 중 피해아동과 같은 학대환경에 살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피해아동에게 학대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이수하게 하여 학대에 대한 인지 및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알게 해야 한다[3].

피해아동 중 여아는 51.8%, 남아는 여아보다 약 3.6%로 낮은 48.2%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여

성은 41.5%, 남성은 58.5%로 여성에 비해 약 17.0% 높게 보고되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리양육자, 친인척, 기타 순으로 각각 15.9%, 4.5%, 2.7%로 나타났다. 부모 중 친부에 의해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43.7%, 친모는 친부보다 13.9% 낮은 29.8%, 그리고 계부, 계모는 각각 2.0%, 1.2%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초·중·고교 직원이 8.4%으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를 볼때 80.3%인 매우 높은 비율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중 아동 가정 안에서 일어난 것은 78.7%였다. 학교 8.5%, 어린이집 3.3%, 유치원 0.8%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와 방임 사례에서는 여아보다 남아가 각각 약 3.4%, 1.0% 높았다. 정서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약 4.2%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 사례에서는 82.4%로 여아가 매우 높았다[4].

위 사례결과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76.9%,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이 80.3%로 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행해지고 가정안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부모의 사고와 행동이 아동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으며, 부모에 의해 행해지는 학대를 예방할 수만 있다면 학대받는 아동의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타인에게 받는 학대 또한 그 후유증과 신체적 · 정신적 피폐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하물며 부모에게서 사랑받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야 할 아이들이 공포스러운 가정속에서 심리적 불안상태로 부모와 애착 관계도 형성하지 못한 채 불신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예방의무교육 제안

3.1 현 아동학대 사후관리

아동학대 사후관리는 피해아동의 학대에 대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의 재발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상담, 의료, 심리치료, 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결 및 가족기능 강화,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절차 지원, 학습 및 보호지원, 법률자문, 아동 응급조치와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 진행, 행위자 임시조치 또는 고소· 고발처리,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정을 방문하여 심리검사 및 치료, 상담, 일상생활 지원, 건강·정신지원, 전문서비스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도 포함된다[5].

하지만 부모라면 모두 꼭 받아야 하는 부모학대 예방의무교육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예비부모교육 또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부모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서 자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됨으로써 겪게 될 다양한 변화에 대해 사전에 알게 됨으로써 여성은 신체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감을 미리 예방하고 남성은 부모교육을 통해 아빠로서 자녀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면서 부부간의 친밀도도 높이고 자녀에 대한 애정도 깊어질 것이다.

3.2 아동학대 예방의무교육

아동복지법 제2조 2항에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의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하며 지역 사회와 국가의 보호 속에 성장해야 마땅하다.

아동학대 예방의무교육을 제안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아동학대 예방의무교육

대상	교육 내용	조건
전국민	아동권리헌장 아동학대 개념, 유형, 신고	
출산 전 예비부모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개념, 유형, 신고 부모교육(영아기)	이수 시 출산수당 지급
부모	아동학대 개념, 유형, 신고 아동학대처벌법 부모교육(유아기)	이수 시 육아수당 지급
아동	아동권리헌장 아동학대 개념, 유형, 신고	
*교육방식 : 온라인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통해 최소 이수시간을 규정하고 의무화할 경우 아래와 같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피해의 심각성을 주지시킬 수 있다.

둘째, 예방 의무교육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로 인식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단지 부모에 국한시

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모두의 책임임을 이해시킬 수 있다.

셋째, 사적이며 폐쇄적 장소인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일어날 경우 은폐되기 쉽고 재발될 수 있기에 사회 전체의 예방 의무교육을 통해 적극적 신고 및 보호 등 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전까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진행하여 출산하게 될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또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국가의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예비부모로서 알아야 할 충분한 지식을 쌓아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부모가 된 이후의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법적 처벌 및 아동 보호조치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자녀가 보호된다는 경각심을 주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맞는 부모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오는 부모의 심리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조범근 외,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지, 제20권 제4호, pp.269-298, 2017.
[2]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19.
[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19.
[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19.
[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19.